

2023년도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29(수), 14:00 ~ 15:30
- 장 소: 스탠포드 호텔(서울 마포구)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심의위원: 김경숙 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원 위원, 김정숙 위원, 김춘식 위원, 박재화 위원, 손수호 위원, 송수현 위원, 심동섭 위원, 오영주 위원, 임형주 위원, 정경오 위원, 최진원 위원, 한승원(W)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3-2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 보고안건 제1호: 2023년도 3분기 전체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 안건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숙형 부장
 -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숙형 부장
 - 의결안건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숙형 부장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보고안건

○ 제1호: 2023년 3분기 전체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주요내용

- 2023년도 3분기 전체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2. 의결안건

○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

- 전차 회의록(제2023-260회 확인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함.)

-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정 정지 시정권고 의결안건의 회의록 및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제1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3-244325호는 제2023-266회 제2분과위원회(2023, 10. 24. 개최)에서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이용자가 ‘☆☆☆☆☆☆’ 버전 전용 광고차단 크랙 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3-24432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크랙 파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또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33개 계정에 대해 1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4주의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건 13개 온라인서비스의 33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 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4주의 계정 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60)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경숙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4~15쪽 위원명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계정 정지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권리자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물명, 위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보고안전 제1호: 2023년 3분기 전체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이숙형 부장이 2023년 3분기 전체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o 의결안건 제1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 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등이며, 시정권 고 이행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임. 위원님 들께서는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 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사항 없음.
- 김경숙 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안전번호 제2023-24432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에 ‘☆☆☆☆☆☆’ 버전 전용 광고차단 크랙 파일이 게시한 사안임.
- A 위원: 2분과에서 심의대상 안건을 전체위에 올린 목적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광고차단 크랙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다만 해당 크랙에서 제공하는 기술 관련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음.
- B 위원: 2분과에서는 부결을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

같음. 다른 분과 위원님들 중 '■■■'을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광고차단 크랙이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가 있는데, 심의대상 안건은 그러한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타 분과
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봄.

- C 위원: 다들 생각은 비슷하다고 판단됨. 사족을 붙이자면 예를 들
어서 □□□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음. □□□에 비용을 지불하고 □□□를 이용하는 사안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광고를 피하는 프로그램이 만약 불법이라고 치면, □
□□는 돈을 받고 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의대상 안건은 부결이 맞다고 봄.

- D 위원: □□□처럼 비용을 받고 광고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광고가 붙어야 □□□도 이득을 보며 그런 경우에 광고를 막
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처럼 광고를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는 조금 틀린 것 같음.
□□□에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
□□의 편성권, 콘텐츠 배치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은
□□□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은 무작위로 광고를 내보
는 것이며 포털과 제휴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 광고 게재와 포털의 광고가 뜨는 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함. 이 경우는 광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에 권리 침해는 없다고 생
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 E 위원: 포털의 광고 차단 프로그램 사건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지만, 그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이 도입 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먼저 법리를 판단하면서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임. 우리 사안에서도 저작권 측면에서 봤을 때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결이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논의됐던 내용들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면, □□□ 같은 경우 광고를 게시하는 것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면서 광고를 게시하지 않는 것도 사업 모델임. 양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가 하는 행위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 영역은 아닌 것 같음. 그리고 ■■을 배포하면서 광고를 붙이는 것이 ★★★★★의 사업 모델 일 수 있음. 그런데 광고를 차단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가 있지만, 권리 침해 요소는 상당히 있을 것 같음. 단지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또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라는 이유로 가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보면 논의 배경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며 저도 부결에는 동의함.

- F 위원: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게 맞다고 봄.

- D 위원: 정보통신사업법을 보면 광고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불법으로 즉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음. 예를 들어서 광고 삭제를 눌렀는데 삭제가 안되거나 광고가 확대 되는 것을 금지행위로 보고 있음. 그래서 ■■의 광고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에서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방통위에서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태임. 즉 광고라는 전체하에 접근한다면 정보통신사업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의 권리 측면만 보는게 아니라 이용자의 어떤 선택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이렇게 무작위로 광고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김경숙 위원장: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음. 광고 차단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음. 그런데 다른 법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그 정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이렇게 저작물의 이용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인 경우에는 침해 정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심의대상 안건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신 것 같음. 그런데 E 위원님이나 D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판례에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모든 법에서 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음. 좀 전에 E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털에 광고 화면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자기 광고를 넣어서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음. 그런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일부 수정을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이숙형 부장: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토 보고서에 작성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더 필요함. 그리고 ■■■ 프로그램이 윈도우를 안보이게 하는 간단한 조작으로 광고를 안보이게 하는게 가능할거라고 보여서 독립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음.
- G 위원: 제가 보기에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뭔가를 가해서 변형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음. 즉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광고 기능을 제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게시자가 취미로 한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크랙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광고를 보라는 것인데, 그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목적을 해하는 것임. 개인적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 배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인 것이 사실임.
- 김경숙 위원장: 우리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음악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는데, G 위원님 의견은 ■■■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임.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H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변경 했거나 해할 정도의 영향을 가했다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심의 대상 안건은 소스 코드 자체에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음. 실제 보여지는 HTML 단계에서 광고기능을 막는 그런 식의 기술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 대해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이숙형 부장: 기존에 방송사의 트롯 영상을 □□□ 광고가 만나오게 구현한 앱이 있었음. 그 앱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보호원에 플레이스토어에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보호원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음.
- B 위원: 말씀해 주신 사례는 3분과에서 심의한 것으로 ○○○○의 트롯트 프로그램이었음. 요새 방송사에서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에 직접 영상을 올리는데, 모바일 앱에 그 영상들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도록 올린 것임. 그러면 ○○○○은 광고 수익을 못 받으니까 보호원에 삭제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안임. 그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본것임.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에 올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올린것이니깐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모바일앱에서 광고가 안보이게 조치한 사안에 대해서 구글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지만, 이번 심의대상 안건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크랙 파일은 이용자가 다운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 이숙형 부장: 그러함.

- D 위원: 정보통신사업법에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탑재를 제한한다는 표현이 있음. 그러니까 ★★★★★가 광고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어떤 다른 정보를 가리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광고도 원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광고할 권리가 있으니까 광고를 삭제하면 안돼 이걸 아닌 것 같음. 법적으로도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광고를 배포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가리지 말고 광고를 해라' 이런 의미임.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방송에서 무작정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따라 횟수, 유형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 없이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임.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크랙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자기 컴퓨터 안에서만 ■■■ 광고가 뜨지 않게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침해가 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G 위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패치가 나오면 바로 무력화 할 수 있음. 아마 ■■■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할 때 동의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며 ★★★★★에서 얼마든지 광고 차단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 김경숙 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44325호는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44325호는 부결함.

o 의결안건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1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33개 계정에 대해 1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4주의 계정 정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5. 폐회 선언

o 김경숙 위원장이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27.

위원장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김정숙

위원 김춘식

위원 박재화

위원 손수호

위원 송수현

위원 심동섭

위원 오영주

위원 임형주

위원 정경오

위원 최진원

위원 한승원